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2. 13

나. 발 의 자: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이성복, 강철우, 변상원, 박희순의원)

다. 회부일자: 2017. 2. 16.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2. 27.

## 2. 제정이유

-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복지에 관한 책무는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 나. 복지정책에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다툼이 있지만 장단점이 있으므로 장점을 살려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 다.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도 있지만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홀로 사는 노인이 매년 증가하여 고독사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 시점에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해당없음

##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